

조문 별 제·개정 이유서

◇ 행정규칙명

- 산업통상자원부 감사규정

◇ 개정 이유

- 자체감사 등에 있어 피감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마련과 감사운영의 객관성·효율성 증진

◇ 주요내용

- 가. 제2조2호 개정 : 기존규정은 '유관기관' 범위에 대한 정의가 불분명한 바, 효율적인 협·단체 감사를 위해 자체감사 대상기관 근거 명확화 필요
- 나. 제20조(실지감사) 4개항 신설 : 실지감사 시 피감사자 권익 보호 및 피감사자·피감기관의 의무 사항 명시
- 다. 제20조의2(근무시간 외의 조사) 신설 : 근무시간 이후에 조사가 필요한 경우를 위한 근거 마련 및 근무시간 외 조사 시 휴식시간 등 보장
- 라. 제26조(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정지) 개정 : 현행 규정에는 조사개시 통보(징계·문책시효 정지, 의원면직 제한, 포상추천 제한)관련 규정만 있었으나, 피감사자의 권익 보호(시효정지 해제, 의원면직, 포상추천)를 위해 조사종료 통보 관련 절차 등 추가

마. 제32조의2(가중 처분) 신설 : 반복 비위행위자에 대한 가중 처분요구 근거 마련

바. 제33조(감사결과 이행 등) 개정 : 감사결과의 이행시기 세분화

사. 제35조(감사결과의 공개) 개정 : 감사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감사결과 공개시기 명확화

아. 제36조(감사심의회) 개정 : 심의위원 최소 인원수(5명) 및 의결 정족수 명시

자. 제46조(감사결과의 처리) 개정 : 사전컨설팅 처리기한 단축